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사유”를 각각 “사유와 연월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망 등으로 인하여 면허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제15조제6항 중 “내주어야”를 “내주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휴업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 휴업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서를 재작성하여 휴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의 연장 신고가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종료된 때에 동물진료업의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 중 “켄넬코프백신”을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

이러스백신”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야”를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의 재발급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위해 내야”로, “각 호의 구분과”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본문 중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를 “제3호, 제2항제1호, 제2호”로, “같은 항 제3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과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 국가시험: 영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한 수수료
2.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한 수수료

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물병원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별표 2 II 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란(중전의 제10호차.) 중 “영 제20

조의2제6호”를 “영 제20조의2제7호”로 하며, 같은 II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약사법」에 따른 품목 허가나 품목 신고를 받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다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20조의2제6호	면허효력정지 15일	면허효력정지 1개월	면허효력정지 6개월
---	-------------	------------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중 “(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를 “(소·말·돼지·염소·사슴·노새·당나귀·닭·오리·메추리·꿩·꿀벌) 및 수생동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① (생략)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u>사유</u> 6. 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u>사유</u> <u><신설></u>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사유와 연월일</u> 6. ----- ----- <u>사유와 연월일</u> <u>일</u> 7. <u>사망 등으로 인하여 면허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u>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① ~ ⑤ (생략) ⑥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확인증을 <u>내주어야</u> 한다.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u>내주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u> ---.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계
시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0조
제1항에서 “진찰, 입원, 예방접
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
에 대한 진료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휴업기간
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 휴
업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서를 재작성하여 휴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의 연
장 신고가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종료된
때에 동물진료업의 업무를 재개
한 것으로 본다.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계
시 대상 및 방법) ① -----

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제1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출장진료전문병원의 동
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
용은 제외한다.

1. · 2. (생 략)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
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4. · 5. (생 략)

② (생 략)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생 략)

2.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
원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
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
는 사람: 2만원

3. · 4. (생 략)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3. -----
-----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수수료) ① -----
---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
보건사 자격증의 재발급과 동물
병원 개설의 신고를 위해 내야
--- 각 호와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2. · 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으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

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과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 국가시험: 영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고한 수수료

2.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고한 수수료

③ ----- 제3호, 제2항제1호, 제2호-----
----- 제1항제2호-----

----- 제2항제1호 및 제2호-----

-----.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 4. (생 략)	----- ----- ----- -----. 1. ~ 4. (현행과 같음)
---	--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

개설자	시설기준
수의사	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하는 것 4.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하는 것 4. 임상병리검사실 현미경·세균배양기·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하는 것 5.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실(임상병리검사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1. 위 표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과 처치실은 함께 쓰일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의 면적기준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함께 쓰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위 표의 시설기준 중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 및 진료실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동물병원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확 인 서

본인은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노새·당나귀·닭·오리·메추리·꿩·꿀벌) 및 수생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

(서명 또는 인)